

강원도립대학교 유연 학사제도 운영규정

(제정) 2021-08-26 규정 제58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8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유연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연 학사제도”란 학사제도의 유연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를 위하여 운영하는 유연학기, 다학기, 집중학기, 인성학기, 취업탐구학기 등의 제도를 말한다.
2. “유연학기”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,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다학기”란 매 학년도를 3학기 이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.
4. “집중학기”란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기 중에 수업기간을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집중이수제 수업 운영을 말한다.
5. “인성학기”란 학생의 기초 및 전공 인성 역량 함양 및 대학의 인재양성을 위한 수업 운영을 말한다.
6. “취업탐구학기”란 학생들의 직업의식 제고와 취업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운영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) ① 유연 학사제도는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 단, 3년제 학과의 2학년 2학기는 전공자유(8주), 전공자유(16주)로 운영한다.

구 분		1학기			2학기		
1학년	A트랙	전공기초 (8주)	인성학기 (1주)	전공기초 (7주)	전공일반 (8주)	전공일반 (8주)	
	B트랙	전공기초 + 인성학기 (15주) (1주)			전공일반 (16주)		
2~3학년	A트랙	전공심화 (8주)		전공심화 (8주)	취업탐구학기 (1주)	전공자유 (7주)	전공자유 (8주)
	B트랙	전공심화 (16주)			취업탐구학기 + 전공자유 (1주) (15주)		

② 학과는 매 학기별 A트랙, B트랙 중 학과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 과정을 설계 및 운영한다. 단, 1학년 1학기는 A트랙 중심으로 설계하며, 일부 교과 특성에 따라 16주 수업이 필요한 경우 B트랙 설계를 권장한다.

③ 인성학기 및 취업탐구학기는 전체 학과 필수로 운영한다. 단, 취업탐구학기는 졸업학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시행 교과목) 유연 학사제도 실시 가능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집중수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
2. 정규학기에 실습이 많은 학과의 교과목
3. 인성함양, 진로선택, 취업준비 교과목
4. 기타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교과목 등

제5조(강의계획서) 유연 학사제도 시행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수업운영(집중학기 등) 내용을 명시하고 수강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점) ① 유연 학사제도로써 집중수업시간표를 편성할 때에는 학점 당 수업시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②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당 이수시간은 1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주관부서) ① 집중학기는 교학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.

② 인성학기는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.

③ 취업탐구학기는 취·창업정보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유연 학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1. 8. 2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 운영한 유연 학사제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